

소 변 경 신 청 서

사 건 2000가합0000 매매대금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소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.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20〇〇. 〇. 〇. 잔 대금 〇〇〇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,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채무를 대여금채무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내용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기일 20〇〇. 〇. 〇, 이자는 연 25%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매매대금채무의 청구는 대여금채무로 변경하고 청구취지기재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의 범위내인 연 25%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5호증

각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통

1. 신청서부본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			or.K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	제출기간	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(변론 🕏 🔭 🔭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🦠
			할 때까지)
			(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)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		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
			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	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,		
비 용	변경으로 증가된 소송목적의 값에 대하여 각 심급별 소정의 인지첩부		
	※ 소송목적의 값에 변경이 없을 경우 500원인지 첨부		
기타	·소변경불허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, 종국판결에 대한		
	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음(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누5096 판결).		
	·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		
	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		
	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		
	명한 경우에는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		
	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음(대법원		
	2003. 1. 10. 선고 2002다41435 판결, 1994. 10. 14. 선고 94다10153 판결).		
	·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		
	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,		
	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		
	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		
	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,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		
	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		
	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44416 판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 소장의 보정, 반소